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회)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000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 작성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 종류와 작성된 도로대장을 제출하는 방법 및 도로대장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도로대장 작성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 종류와 작성된 도로대장을 제출하는 방법 등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업무 마련(안 제50조의3 신설)
- 다. 도로대장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7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9. ~ 2025. 1. 20.)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도로대장)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 중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대행하는 도로공사
2. 법 제33조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3. 법 제35조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해 시행하는 도로공사
4.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5. 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이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이하 이 조에서 “특별한 사유”라 한다)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려

는 경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관리·활용)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
영·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관리·활용에 관한 연구개
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관리·활용에 필요
한 사항

별표 7 제2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200
---	-------------------	-----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5호”를 “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6호”를 “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7호”를 “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을 “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0조의2(도로대장)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 중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상급도로 관리청이 대행하는 도로공사 2. 법 제33조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3. 법 제35조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해 시행하는 도로공사 4.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5. 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이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라

<신설>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이하 이 조에서 “특별한 사유”라 한다)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관리·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

	<u>축·운영·관리·활용에 관</u> <u>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u> <u>4. 그 밖에 도로대장 통합관리</u> <u>체계의 구축·운영·관리·</u> <u>활용에 필요한 사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	
연 락 처	(044) 201 - 4132